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517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이정문 · 이학영 · 이인영
김남근 · 한민수 · 문진석
박수현 · 이연희 · 이재관
안태준 · 전현희 · 정태호
한준호 · 최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리점은 공급업자에 대한 열등한 지위로 인하여 여전히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업자는 일방적인 대리점계약 해지를 내세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해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대리점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여 대리점주의 대리점계약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대리점단체 구성) ① 대리점은 공급업자와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대리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급업자는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하거나 대리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6(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점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리점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23조 중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을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또는

제12조의5제2항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을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또는 제12조의5제2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p>제12조의5(대리점단체 구성) ①</p> <p>대리점은 공급업자와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업자 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 (이하 “대리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공급업자는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대리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u><신 설></u> | <p>제12조의6(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p> |

제23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점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리점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23조(시정조치) -----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또는 제12조의5제2항을-----

-----.

제25조(과징금) ① -----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또는 제12조의5제2항을-----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